[별표 1의2] <개정 2011.8.31>

채혈금지대상자(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)

I. 공통기준

- 1. 건강진단관련 요인
 - 가.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,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
 - 나. 체온이 섭씨 37.5도를 초과하는 자
 - 다.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(수은주압)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(수은주 압)이상인 자
 - 라.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(수은주압) 이상인 자
 - 마.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

2. 질병관련 요인

가. 감염병

- 1) B형간염, C형간염, 후천성면역결핍증, 한센병, 바베시아증, 샤가스 병 또는 크로이츠펠트-야콥병 등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, 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
- 2) 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자
 - 가)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나)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다) 성병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라)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마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환자 또는 병 력자

나. 그 밖의 질병

- 1) 발열, 인후통, 설사 등 급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 진지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2) 암환자,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자, 간경변 등 간질환자, 심장병환자, 당뇨병환자, 류마티즘 등 자가면역질환자, 신부전 등 신장질환자, 혈우병, 적혈구증다증 등 혈액질환자, 알콜중독자, 마 약중독자 또는 경련환자. 다만, 의사가 헌혈가능하다고 판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

가. 약물

- 1)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 아스피린을 투여 받은 후 3일, 티클로피딘 등을 투여받은 후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(혈소판 헌 혈의 경우에 한한다)
- 2) 이소트레티노인,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3)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)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, 태반주사제를 투여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자
- 5)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6) 과거에 에트레티네이트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,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,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자, 변종크로이츠펠트-야콥병의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등 투여자는 영구 금지

나. 예방접종

- 1) 콜레라, 디프테리아, 인플루엔자, A형간염, B형간염, 주사용 장티푸스, 주사용 소아마비, 파상풍, 백일해, 일본뇌염, 신증후군출혈열, 탄저, 공수병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2) 홍역, 유행성이하선염, 황열, 경구용 소아마비, 경구용 장티푸스 예 방접종을 투여 받고 2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3) 풍진,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4.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

- 가. 임신 중인 자,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. 다만,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나,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다.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, 혈장성분채혈,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및 두단 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, 백혈구성분채혈 및 한단위혈소판성 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,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이 경

과하지 아니한 자

라.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

5.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

과거 헌혈검사에서 B형간염검사, C형간염검사,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, 인체(T)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(혈장성분헌혈의 경우는 제외한다)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혈액검사 결과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자

6. 그 밖의 요인

- 가. 제6조제2항제2호의 문진 결과 헌혈불가로 판정된 자
- 나. 그 밖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Ⅱ. 개별기준

_Ⅱ. 개발기문	
채혈의 종류	기 준
320밀리리 터 전혈채혈	1. 16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 2. 혈액의 비중이 1.053 미만인 자,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.5그램 미만인 자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퍼센트 미만인자
400밀리리 터 전혈채혈	 3.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1. 17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 2. 체중이 50킬로그램 미만인 자 3. 혈액의 비중이 1.053 미만인 자,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.5그램 미만인 자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퍼센트 미만인자 4.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
혈장 성분채혈	 1. 17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 2. 혈액의 비중이 1.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.0그램 미만인 자 3. 직전 헌혈혈액검사 결과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청단백량이 6.0그램 미만인 자
한단위 혈소판 성분채혈	1.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2. 혈액의 비중이 1.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 램 미만인 자

	3.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수가 15만개 미만인 자
	4. 한단위 혈소판성분채혈 72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	5.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
	1.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
두단위	2. 혈액의 비중이 1.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
혈소판	램 미만인 자
성분채혈	3.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수가 25만개 미만인 자
	4.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
	1.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
	2. 혈액의 비중이 1.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
혈소판	램 미만인 자
혈장	3. 직전 헌혈혈액검사 결과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청단백량이
성분채혈	6.0그램 미만인 자
	4.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수가 15만개 미만인 자
	5.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
	1.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
두단위	2. 체중이 70킬로그램 미만인자
적혈구	3.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4.0그램 미만인 자
성분채혈	4.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4회이상 또는 성분채혈횟수가
	24회 이상 또는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횟수가 2회 이상인 자

비고: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만 가능함